

# 「2024년 지역특화콘텐츠개발지원사업」 제작지원사업(자유과제) 참가기업 모집 공고

(재)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에서는 지역 특화 콘텐츠 발굴 및 육성을 위하여, 다음과 같이 「2024년 대구 지역특화콘텐츠 제작지원사업(자유과제)」 참가기업을 모집하오니 관련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.

2024. 4.

(재)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장

## 1 사업목적

- 지역 특화 소재를 활용하여 부가가치가 창출될 수 있는 콘텐츠 개발
- 콘텐츠 제작지원을 통한 지역 콘텐츠 기업의 비즈니스 확장 및 제작 역량 강화

## 2 사업개요

- 사업명: 2024년 대구 지역특화콘텐츠 제작지원사업(자유과제)
- 사업기간: 협약 체결일 ~ 2024. 11. 29.
- 사업내용: 지역 특화 소재 기반 콘텐츠 제작지원
- 공모방식: 자유공모
- 지원대상: 콘텐츠 제작 기업(필요 시 컨소시엄 구성 가능) \*지원자격 확인 필수
  - ※ 주관기업이 역외 기업(대구 지역 이외 기업)인 경우, 협약 체결일 기준으로 1개월 이내에 본사 또는 지사 지역 내 설치 완료 必(지원 시 협약서 제출 및 이전 후 사업자등록증 증빙 제출 필수)
  - ※ 참여기업의 경우, 소재지 불문 최대 1개사 참여 가능
- 지원내용: 지역 시그니처 콘텐츠 개발 및 새로운 지역 문화 창출이 가능한 콘텐츠 개발 지원
  - ※ 지원분야: 만화, 음악, 애니메이션, 방송, 캐릭터, 실감콘텐츠, 융복합콘텐츠 등
  - ※ 단, 게임, 출판, 영화, 순수 문화예술공연 장르는 중복성을 고려하여 지원 제외
  - ※ 융복합콘텐츠의 경우, 기술 등 타 요소보다 콘텐츠가 중심이 되어야 함
- 지원 중점 방향
  - 콘텐츠의 지속적인 활용과 발전이 가능한 시장창출형 콘텐츠 개발
  - 기업의 레퍼런스 발굴 및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이 가능한 콘텐츠 개발
  - 지역산업과의 시너지 창출이 가능한 연계 콘텐츠 개발
  -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 가능한 글로벌 콘텐츠 개발

### ○ 지원규모

※ 지원금액은 예산심의를 통해 조정될 수 있음

구분	선정규모	지원금	기업자부담	비고
자유-A형	1개	100백만원 이내	총사업비(지원금+자부담)의 10% 이상(현금)	대구 지역특화콘텐츠 제작
자유-B형	1개	150백만원 이내		

### 3

## 사업 세부내용

### ○ 지원내용

- 선정규모/방법: 2개 과제/자유공모
- 지원내용: 대구 지역특화콘텐츠 제작 직접지원

#### 지역특화콘텐츠란?

- 지역(행정구역, 문화권)의 고유한 창조자산 또는 지역 상징성을 포함한 소재를 활용한 콘텐츠
- 지역에서 개발되어 지역 내 서비스 및 유통을 통해 이윤창출이 가능한 콘텐츠
- 특화된 문화·생태·시설/인프라·관광자원·문화향유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지역에서 개발(제작)되어 사회경제적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콘텐츠

#### 지역특화콘텐츠 예시

※ 본 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것이며, 위 내용과 일치할 필요는 없음

- 지역 시장 또는 기업 콜라보레이션 콘텐츠 (체험공간 조성 등)
- 지역 축제 연계 콘텐츠, 지역 인프라 활용 전시 콘텐츠
- 대구 소재 시설·인프라 등을 활용한 아나모픽, 실감 콘텐츠 개발 및 시연
- 대구 게임콘텐츠 활용 애니메이션 개발
- 대구 주류업계와 콜라보 콘텐츠 개발, 제품화 및 유통
- 대구 관광상품 굿즈 개발, 지역유통망 활용 제품 유통 및 판매
- 지역 시그니처 콘텐츠 개발, 지역 문화 창출이 가능한 콘텐츠 개발

#### (참고) 2023년 지역특화콘텐츠 제작지원사업 선정과제

- (융복합 콘텐츠) AI 이미지 분류 모델과 대구 10경을 활용한 융복합 콘텐츠 제작 및 실증
- (미디어아트) 파노라마 대구 3경 지역특화콘텐츠 제작 및 전시
- (아나모픽 실감미디어) 대구 지역 문학 자원을 활용한 실감콘텐츠 제작 및 전시

### ○ 지원범위: 콘텐츠 제작비(자산취득 불가) \*안내서-사업비 산정기준 참조

### ○ 지원금 지급: 총 2회 분할지급

- 1차 지원금(70%): 협약체결 이후 협약금액의 70% 지급
- 2차 지원금(30%): 중간평가 결과 “계속” 판정 과제에 한해 잔금 30% 지급
- ※ 1차 지원금 신청 시, 이행보증보험증권(보험금액: 지원금 100%/보험기간: 협약기간 + 60일) 제출 필수
- ※ 중간평가 70점 미만인 경우, 잔금 지급 불가 및 협약 파기, 기지원금 환수

### ○ 과제 당 최종 결과물

- 지역특화 콘텐츠 개발 및 제작 1식 \* 사업기간 내 유통 또는 서비스 및 시연되어야 함
- 콘텐츠 관리 및 운영 매뉴얼 제작 1식
- 진도보고서 및 과제관리 보고서 제출(월 1회)
- 신규 일자리(정규직 또는 계약직) 창출 2명 이상
- ※ 일자리 창출 기준: 고용일로부터 6개월 이상 유지, 퇴사 시 대체 인력 채용 필수
- ※ 컨소시엄의 경우 기업별(주관기업 및 참여기업) 2명 이상 신규 일자리 창출 권장

### ○ 권장사항

- 당해연도(~2024. 12월 말) 콘텐츠 사업화 계약체결 1건 이상
- 홍보물(홍보영상, 대표이미지 포함) 제작 1식
- 언론보도(결과물 활용 온·오프라인 매체 활용) 1건

○ 지원자격

구분	세부내용
지원자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<b>주관기업: 콘텐츠 제작 기업(부동산업/협동조합 등 지원 불가)</b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단, 역외 기업(대구 지역 이외 기업)의 경우, 협약 체결일 기준으로 1개월 이내에 본사 또는 지사 지역 내 설치 완료 <b>必</b>(지원 시 확약서 제출 및 이전 후 사업자등록증 증빙 제출 필수)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※ 지원 시 확약서(서식 18) 제출 및 이전 후 사업자등록증 증빙 제출 필수</li> <li>※ 기한 내 불이행 시, 선정 철회 및 지원금 회수</li> </ul> </li> <li>- 「문화산업진흥 기본법」 제2조 참고 문화산업 분야에 해당되는 기업</li> <li>- 주관기업 참여비율 51% 이상(총사업비 집행 기준)</li> </ul> </li> <li>• <b>참여기업: 소재지 불문 최대 1개사 참여 가능</b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참여기업에 한해 대기업 참여 가능(단, 정부지원금은 지원하지 않으며, 현금 자부담 매칭 20% 이상, 유통판로 확보서 의무 제출)</li> </ul> </li> <li>• <b>주관/참여기업 불문 2024년 지역특화콘텐츠개발지원사업 공모 중복 지원 불가(타지역 포함)</b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단, 2024년 대구 지역특화콘텐츠개발지원사업(소재지정과정제) 공모 지원하였으나, 미선정된 업체는 지원 가능</li> </ul> </li> </ul>
지원자격 제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비영리기업 지원불가</li> <li>• 2020.01.01.~2023.12.31. 기간 내 2회 이상 본 사업의 <b>주관기업으로</b> 지원금을 교부받은 기업</li> <li>• 신청일 현재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에서 최근 3개년 간 지원받은(연구개발사업 포함) 누적금액의 합계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</li> <li>• 신청일 현재 사업자가 한국콘텐츠진흥원 및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의 지원사업에서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아 추진 중인 과제가 총 2개 과제 이상인 경우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※ 당해연도에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콘텐츠지원사업은 최대 2개로 제한함</li> <li>※ 단, 지원금이 50백만원 이하인 경우는 과제 수에서 제외</li> </ul> </li> <li>• 신청일 현재 동일한 과제로(과제 목표와 산출물이 동일한 경우)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 및 타 기관의 지원사업에 기 선정되어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은 경우</li> <li>• 신청일 현재 또는 이후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사실이 있는 경우</li> <li>• 보조사업 수행 등의 배제 결정을 받은 주관기업, 참여기업, 대표자 및 책임자, 또는 보조금 수급의 제한을 받은 보조금수령자</li> <li>•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 중앙행정관서의 장으로부터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주관기업, 참여기업, 대표자 및 책임자</li> <li>• 신청일 현재 4대보험 및 인건비 체납사실이 있거나, 인건비 체납 및 미지급과 관련하여 진행 중인 소송이 있는 경우</li> <li>• 신청일 현재 사업자(주관기업, 참여기업)가 콘텐츠지원사업에 따라 발생한 정산반납 대상액(지원사업 정산결과에 따라 사업자가 전담기관에 납부하여야하는 금액) 및 기술료를 체납(매출조사 거부, 회피 등 포함)하고 있는 경우</li> <li>• 신청일 현재 기업의 재무제표/신용도 평가 상의 이유로 이행보증증권(계약/선금/중도금/잔금 등)의 발행이 불가능한 경우</li> <li>• 신청일 현재 사업자(주관기업, 참여기업), 과제참여인력, 대표권자, 업무집행권자 및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자가 「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경우</li> </ul>

## 4

## 추진일정 및 선정방법

※ 일정 및 절차는 변경될 수 있으며, 평가 대상자에게 개별 공지 예정

### ○ 추진일정

공고 및 접수	기업 선정	협약체결	과제수행	사후관리
e나라도움 접수 및 원본서류 제출	서류/발표/현장 평가	DIP-선정기업	과제수행 및 중간평가	결과평가, 사업비 정산 및 콘텐츠 관리
24년 4월~5월	24년 5월 중	24년 6월 중	24년 6월 ~ 11월	24년 12월 ~

### ○ 선정절차

평가단계		선정방법
1차	서류적합성 검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적합성 검토</li> <li>e나라도움 자격검증 결과에 따른 검토대상 분류 기업 소명 자료 점검</li> </ul>
2차	서면평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접수 서류평가</li> <li>평가위원 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평균점수 70점 이상 기업 중 고득점순으로 발표평가 대상 선정(선정규모의 3배수 내외)</li> <li>※ 지원과제 수가 선정규모의 3배수 미만일 경우, 서면평가 생략</li> <li>※ 평가위원회 의견에 따라 발표평가 대상 선정규모는 변동가능</li> </ul>
3차	발표평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과제책임자 PT발표 및 질의응답</li> <li>평가위원 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평균점수 70점 이상 기업 중 고득점순으로 현장실사 대상 선정</li> </ul>
4차	현장실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참여인력, 개발환경, 보유 기술 및 사업수행 능력에 대한 현장실사</li> </ul>
5차	예산심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예산심의 및 최종과제 선정</li> <li>※ 심의를 통해 사업비가 조정될 수 있음</li> </ul>

※ 예비후보 과제 선정 예정

※ 평가 진행 중 선정기업의 결격사유 발생 또는 사업 포기 등의 사유 발생 시, 후순위자 선정 예정

### ○ 선정기준

※ 세부 평가항목과 배점은 변경될 수 있음

#### - 서류적합성 검토

구분	심사기준	적합여부	
		적합	부적합
서류적합성 검토	• 사업자등록증 기준 사업장 소재지		
	• 공고기준 필수 제출서류 제출 유무		
	• 공고기준 지원제외 대상 유무		

- 서면평가

평가항목	내용		배점
기획 및 내용	• 적합성	• 본 사업의 취지 및 추진방향과의 부합 여부 및 지원 필요성	40
	• 기획력	• 콘텐츠 및 사업기획 내용의 구체성 및 우수성	
	• 경쟁력	• 기존 콘텐츠와의 차별성 및 독창성	
기대성과	• 성과 활용계획	• 타겟분석의 타당성 및 성과 활용계획의 우수성	20
	• 지역기여도	• 지역 대표 콘텐츠로의 성장가능성, 지역콘텐츠산업 발전 기여가능성	
사업관리	• 참여인력 확보	• 참여인력 확보 여부 • 참여인력의 유사과제 수행경험(또는 학위) 여부	10
	• 관리체계	•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수행관리체계 마련 여부	
예산적정성	• 사업비 규모	• 과제수행을 위한 실제 소요 사업비 규모의 적정성	20
	• 사업비 편성	• 과제 수행 목적과 사업비 편성내역의 부합 여부	
수행기업	• 전문성	• 완성도 높은 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한 전문성 확보 여부 • 유사 과제 수행경험 및 제작역량 보유 여부	10
<b>합계(100점)</b>			<b>100</b>

- 발표평가

평가항목	내용		배점
과제 내용	• 구체성	• 콘텐츠 구성 및 사업계획의 구체성, 실현가능성	30
	• 완성도	• 사업화 및 마케팅 계획, 유통계획(플랫폼 활용 등) 실현가능성	
기대성과	• 경제적 성과	• 본 과제를 활용한 사업화 및 비즈니스 창출 가능성 • 본 과제를 통한 콘텐츠 유통(판매, 방영 등) 및 매출창출 가능성	25
사업관리	• 목표달성 및 사업관리	• 사업 기간 내 제작완료 및 유통, 서비스, 시연 등 가능 여부 • 사업 목표달성 및 사업관리 방안의 구체성 및 우수성	25
예산적정성	• 사업비 규모	• 과제수행을 위한 실제 소요 사업비 규모의 적정성	10
	• 사업비 편성	• 과제 수행 목적과 사업비 편성내역의 부합 여부	
수행기업	• 추진의지	• 본 과제의 취지를 이해하고 있으며, 과제 완성을 위한 의지 여부	10
ESG	• 일자리 창출	• 사업비 대비 일자리 창출 계획의 적절성 및 실현가능성	5
	• 지역경제 활성화	• 본 과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여부	
<b>합계(100점)</b>			<b>100</b>

- 현장실사

평가항목	내용	배점
참여인력	• 사업계획서 상의 개발 및 제작 인력의 유무	P/F
사업장 및 사업 수행능력	• 사업계획서 상의 개발환경(장비 및 SW등) 일치 여부	P/F
	• 사업계획서 상의 기업 소재지 주소 일치 여부	P/F
	• 사업계획서 상의 보유기술과의 일치 여부	P/F
	• 사업계획서 상의 사업수행 능력과의 일치 여부	P/F

- 예산심의: 과제별 사업비 조정 심의

## 5

## 접수방법 및 문의처

- 공고기간: 2024. 04. 19.(금) ~ 2024. 05. 17.(금)
- 신청방법: **e나라도움을 통한 온라인 접수 후, 신청서 서면 제출(오프라인 접수 필수)**
- 신청기간(온라인): 2024. 04. 19.(금) ~ 2024. 05. 17.(금), 14:00까지
- 신청기간(오프라인): 2024. 04. 19.(금) ~ 2024. 05. 17.(금), 18:00까지

### 유의사항

- e나라도움을 통한 신청서 작성 및 제출은 신청기간에만 가능
  - 단, 시스템 정기점검, 긴급점검 등에 따른 접수 제한이 발생할 수 있음
- 마감시간까지 시스템 및 오프라인 접수되지 않을 경우, 추가 접수 불가(시스템 오류 등에 의한 미접수 불인정)
- 온라인(e나라도움) 사업신청 필수이며, 접수 완료된 과제에 한하여 방문 제출 필수
- 마감시한 이후 방문 등 신청·접수 관련 자료 일체의 서류 접수 절대 불가 / 시간 엄수

### ① 온라인 접수(e나라도움)

- e나라도움 홈페이지(www.gosims.go.kr) 접속 후, 회원가입
- e나라도움 상단 [업무시스템 로그인] 버튼 클릭 후, 로그인
- [사업수행관리-신청관리-사업신청관리-공모현황]에서 공모기관에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 지정 후 [검색]
- 공모목록에서 "2024 대구 지역특화콘텐츠 제작지원사업(자유과제)" 선택
-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을 선택 후, 오른쪽 위에 [신청서작성] 클릭
- [사업기본정보], [수행기관정보], [재원조달계획], [자격요건확인], [파일첨부] 탭 순서로 작성
- 모든 탭의 정보 입력 및 제출서류 저장 완료 후 [신청서제출] 탭의 [신청서제출] 버튼을 눌러야 접수완료
- 신청서 제출 완료 후 작성내용 점검('사업 신청현황' 메뉴 활용)
  - ※ 인감이 필요한 서류에는 반드시 인감 날인 후 스캔하여 제출
  - ※ 모든 지원사업은 [한국재정정보원]에서 운영하는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해 진행되오니, 시스템 관련문의는 반드시 e나라도움 고객센터로 연락바랍니다.

### ② 오프라인 접수(서면 제출)

- e나라도움을 통한 온라인 접수 완료 후, 제출서류를 폴더별, 순서별로 정리하여 집계 등으로 고정 후 원본 1부 서면 제출(제본 금지)
- 모든 서류는 백색 A4용지, 세로형, 흑백 또는 컬러, 단면인쇄로 제출
- 모든 내용은 온라인 제출 파일과 같아야 함
- 제출된 서류는 우리원의 요청이 없는 한 수정·삭제·대체될 수 없음
-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,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
- ※ 제출일시: 2024. 05. 17.(금), 18:00까지(제출시간 엄수)
- ※ 제출장소: 대구광역시 동구 장등로 76, 대구콘텐츠기업지원센터 5층 사무실
- ※ 제출방법: e나라도움을 통한 온라인 접수 후, 방문접수(우편접수 가능/제출시간 도착분 까지 접수)
  - 온라인 접수(e나라도움 과제 접수)가 완료되지 않은 기업은 오프라인 접수 불가

## ○ 문의처

- 사업문의: (재)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 콘텐츠전략팀 하민지 전임(053-215-4914, hmj@dip.or.kr)
- e나라도움 사용 및 온라인 접수문의: e나라도움 사용자 지원센터(1670-9595)

# 6

## 제출서류 목록

### 서류 제출요령

- 온라인 신청 시, “제출폴더양식.zip”에 있는 폴더 구조 및 파일명대로 정리, 압축하여 업로드
- 온라인 신청 시, 파일 용량이 50MB 이상일 경우 업로드 불가(사전 용량 확인)
- ※ 압축파일명: 주관기관명\_과제명(키워드로 짧게).zip
- ※ 파일 용량이 클 경우, 분할하여 업로드 요청
- 제출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일에 한해 인정함
- 제출서류 미비 시, 심사 제외될 수 있음

구분	제출서류	제출형식	유의사항	비고	
				주관	참여
0	통합서류	pdf	• 1~20번 제출서류 파일을 통합 및 직인 날인한 1개의 파일 제출	○	X
1	과제신청서	pdf, hwp (둘 다 제출)	• 표지를 제외하고 30페이지 이내로 작성	○	X
2	수행기업 소개서(주관, 참여)	hwp	• 각 기업별로 지정양식에 작성하여 제출 (주관, 참여 양식 다름)	○	○
3	정부지원 수혜실적(최근 3년간)	hwp	• 각 기업별로 지정양식에 작성하여 제출	○	○
4	지원사업 참가기준 체크리스트	pdf	• 각 기업별로 지정양식에 작성 및 서명/날인하여 제출	○	○
5	기업부담금 약약서	pdf	• 지정양식 작성, 직인 날인하여 스캔, 제출	○	○
6	재원부담·배분 총괄표 사업비 산출내역서	hwp	• 각 기업별로 지정양식에 작성하여 제출	○	○
7	위탁사업 계획서(해당 시)	hwp	• 일반용역비 편성 시, 지정양식에 작성하여 제출	○	○
8	참여인력 과제참여 현황 신규인력 채용계획	hwp	• 각 기업별로 지정양식에 대표자, 책임자 등 사업수행에 실제 투입되는 모든 인력에 대하여 작성하여 제출	○	○
9	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	pdf	• 지정양식에 작성, 서명하여 스캔, 제출 • 참여인력 전체의 자필서명 필수	○	○
10	성폭력 관련 사실 확인서	pdf	• 각 기업별로 지정양식에 작성 및 서명/날인하여 제출	○	○
11	성폭력 예방 근절 서약서	pdf	• 각 기업별로 지정양식에 작성 및 서명/날인하여 제출	○	○
12	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(법인의 경우)	pdf	• 각 기업별로 스캔하여 제출 ※ 공고일 이후 발급분 제출 필요	○	○
13	4대보험 납입증명	pdf	• 각 기업별로 스캔하여 제출	○	○
14	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	pdf	• 각 기업별로 스캔하여 제출	○	○
15	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	pdf	• 각 기업별로 스캔하여 제출 ※ 23년 재무제표는 기업상황에 따라 가결산재무제표 제출이 가능하나, 회계기관(사)의 인증이 있어야 함 ※ 회사 설립 후 3년이 되지 않은 기업은 양식 내 사유 작성 후 제출	○	○
16	대표자 주민등록등본	pdf	• 각 기업별로 스캔하여 제출	○	○
17	중복지원금지 약약서	pdf	• 각 기업별로 지정양식에 작성 및 서명/날인하여 제출	○	○
18	역외 기업 이전 약약서(해당 시)	pdf	• 각 기업별로 지정양식에 작성 및 서명/날인하여 제출	○	○
19	위임장(해당 시)	pdf	• 각 기업별로 지정양식에 작성 및 서명/날인하여 제출	○	○
20	별첨자료	자유양식	• (필수) 참여인력 원천징수부영수증 • (선택) 과제를 설명할 수 있는 이외 시청각 참고자료, 선정평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타자료 등	○	○

## 7

## 유의사항(반드시 확인)

- 본 사업은 「문화산업진흥기본법」,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, 「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」, 「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칙(한국콘텐츠진흥원)」, 「콘텐츠지원사업협약 및 수행관리지침(한국콘텐츠진흥원)」 등 관련법령 및 관령규정에 의거하여 수행되며, 선정된 사업자는 관련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해야 함
- 위 규칙과 지침상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의 규정을 적용함
- 동일한 내용으로 우리원이나 타지원기관(정부 및 공공기관)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협약체결 이후라도 협약 취소, 지원금 회수,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
- 제출 서류 중 인감을 날인해야 하는 항목에 날인이 없는 경우 해당 내용은 제안으로 인정하지 않음
- 제출된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
- 본 사업을 위해 제출된 서류의 내용에 허위사항이 확인될 경우 선정취소, 협약 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
- 제출의 방법과 서류상의 누락 혹은 오기재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별도 통보하지 않으며, 이에 대한 불이익은 제출기업에 있음
- 컨소시엄 내 한 개 기업이라도 신청자격 미달 등 문제가 있으면 접수무효 및 선정취소
- 지원대상으로 확정통보 받은 기업이라 하더라도, 협약 시 국세·지방세 완납 증명서(주관기업 및 참여기업)를 제출하지 않는 과제는 협약이 취소됨
- 지원 대상으로 확정통보 받은 주관기업의 장은 협약 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,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할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
- 지원사업에 선정된 업체는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서약서를 협약 시 제출하여야하며, 임금체불 발생 여부가 중간평가 및 결과평가에 반영될 수 있음
- 평가 단계별 선정결과와 최종선정결과는 우리원 홈페이지 또는 개별 공지함
- 최종 과제 선정결과, 적격 과제가 없을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
- 대구지역특화콘텐츠개발지원에 지원한 과제 및 기업은(주관, 참여) 타 지역의 지역특화콘텐츠개발지원에 참여 할 수 없음 (발견 시 협약취소)
- 선정된 모든 과제는 결과평가 이전까지 과제의 개발을 완료하고 최종결과물을 제출해야 하며, 협약기간 종료일부터 7일 이내에 실적보고 및 정산을 완료해야 함
- 본 사업 협약체결 이후에 협약해지 사유 발생 또는 사업기간 내 완료되지 않을 경우 지원금 전액환수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



- 수행기업에 제재사유 발생 시 지원금 환수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제재조치 내용(수행기업명, 사유, 제재내용 등)을 우리원,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음
- 과제수행기관은 지원금을 별도의 계정(계좌)으로 구분·관리하여야 함
- 사업비 사용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, 지원과제와 관련된 자금 집행 및 매출현황 등에 대하여 회계법인을 통해 회계검토를 받아야 함
- 수행기업이 사업비를 당초의 목적대로 집행하지 않거나 임의로 제작을 중단할 경우, 관련법에 따라 사업비의 환수와 필요한 제재조치 등을 취할 수 있음
- 선정기업은 지원기간 내 완성된 콘텐츠(제품 및 서비스) 형태로 결과물을 유통, 서비스, 시연, 실증해야함
- 완성 결과물에 ‘DIP 대구지역특화콘텐츠개발지원사업 지원’ 결과물임을 명시해야 함
- 완성 결과물을 제출하지 못하거나, 지원금의 부당(유용, 횡령 등) 사용, 저작권 분쟁 등 기타 협약의 해약 여건이 발생될 경우, 해당 사업자에게 지원금 전액을 환수할 수 있으며, 또한 향후 지원 사업 지원 불가 등의 제재 조치를 가할 수 있음
- 과제 결과물에 대해 대구시,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, 한국콘텐츠진흥원 또는 제휴기관에서 공공의 목적으로 무상 활용 및 이용할 수 있음
- 선정기업은 사업 수행 기간 중 추진현황 및 실적점검을 위한 현장조사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
- 선정기업은 사업 수행 기간 및 사업종료 후 3년간, 관리기관에서 진행하는 콘텐츠 산업 현황조사(매출액, 고용현황 등)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
- 선정기업은 명확한 보조금 집행·관리를 위하여 결과평가 실시 전까지 e나라도움 보조사업자 과정 수수료증을 제출하여야 함
  - ※ 수수료자의 경우 선정통보일 ~ 결과평가일 내어야 함
- 선정기업은 문체부 문화예술계 성희롱·성폭력 근절 대책(2018.03.)에 따라 성희롱 예방교육 이수 확인서를 결과평가 전까지 필수로 제출하여야 함
  - ※ 남녀고용평등법 및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39조에 근거, 사업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의무 부과 및 미실시 시 과태료가 부과됨
  - ※ 문체부 문화예술계 성희롱·성폭력 근절 대책(2018.03.) : 공모사업 등 지원 시 성희롱 예방교육 이수 확인서 및 성범죄 예방 노력을 담은 서약서 제출 의무화
- 개발물의 무상 하자보수 및 관리 의무기간은 협약 종료일로부터 12개월로 함
- 협약 완료 후 차기 연도부터 3년간 관리기관에서 요청 시, 요구하는 양식에 의거 지원성과조사서 등 증빙자료를 의무 제출하여야 함
- 상기 공고내용은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음

**•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**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문화산업”이란 문화상품의 기획·개발·제작·생산·유통·소비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을 말하며,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포함한다.
  - 가. 영화·비디오물과 관련된 산업
  - 나. 음악·게임과 관련된 산업
  - 다. 출판·인쇄·정기간행물과 관련된 산업
  - 라. 방송영상물과 관련된 산업
  - 마. 문화재와 관련된 산업
  - 바. 만화·캐릭터·애니메이션·에듀테인먼트·모바일문화콘텐츠·디자인(산업디자인은 제외한다)·광고·공연·미술품·공예품과 관련된 산업
  - 사. 디지털문화콘텐츠, 사용자제작문화콘텐츠 및 멀티미디어문화콘텐츠의 수집·가공·개발·제작·생산·저장·검색·유통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
  - 아. 대중문화예술산업
  - 자. 전통적인 소재와 기법을 활용하여 상품의 생산과 유통이 이루어지는 산업으로서 의상, 조형물, 장식용품, 소품 및 생활용품 등과 관련된 산업
  - 차. 문화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전시회·박람회·견본시장 및 축제 등과 관련된 산업. 다만, 「전시산업발전법」 제2조제2호의 전시회·박람회·견본시장과 관련된 산업은 제외한다.
  - 카. 가목부터 차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각 문화산업 중 둘 이상이 혼합된 산업